

첨부서류	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각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족대표자 선정방법

1. 유족 중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.
2. 「민법」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(「민법」 제1000조, 제1001조,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).
 - 가.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이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보다 선순위가 됩니다.
 - 나.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(즉, 자녀가 손자녀보다,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).
 - 다. 처는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,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.
3.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위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피해위로금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.
4.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,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